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2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2944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508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변론종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2. 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5083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소외 E 사이에 2018. 9.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384,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9,38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2018. 9.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 판사 김평호

별지